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4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조인철 · 정준호 · 민형배
양부남 · 박희승 · 안도걸
이해민 · 정진욱 · 최혁진
전진숙 · 박지혜 · 박균택
어기구 · 한민수 · 박수현
서삼석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

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조치의무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제5항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를 “심의위원회에”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를 “심의위원회에”로 한다.

제104조제5항제2호의2 중 “제22조의5제5항에”를 “제22조의5제8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u> <u>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를</u>
<u><신설></u>	

<신 설>

⑤·⑥ (생 략)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 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 ④ (생 략)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조치의무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⑨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 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심의위원회
에-----.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

심 의 위 원 회 에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22조의3제4항 또는 제2 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미디 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 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의2. -----제2 조의5제8항에----- ----- -----
2의3. ~ 17. (생 략)	2의3. ~ 17.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